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9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879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7. 4. 6.
판 결 선 고	2017. 5. 11.

주 문

1. 피고가 201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02,750원, 무신고 가산세 80,55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40,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0,27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4,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9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5. 대한민국(계약담당관 정읍국유림관리소장)과 사이에, 대한민국으로부터 [redacted]-[redacted]군 B 55,000㎡ 지상의 수목 입목재적 468.44㎥(수종: 소나무입목, 활엽수입목, 생산지정 369.48㎥, 이하 '이 사건 임산물'이라고 한다)를 20,137,77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국유임산물매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010. 11. 17. 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24. 원고에게 취득세 703,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70,37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의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가산세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낸 후 2017. 3. 16. 원고에게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724,220원(취득세 402,750원, 무신고 가산세 80,55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40,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합계 72,400원(농어촌특별세 40,270원, 무신고가산세 8,05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4,0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재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2, 갑 제2호증의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9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것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이 아니라 원목(입목을 벌채한 목재)이고, 관계법령의 규정 및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물은 입목이 아닌 원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입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며, 신의성실의 원칙, 비과세 관행 및 다른 1차 산업과의 형평에도 반한다. 설령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비과세 관행과 입목의 개념이 법률상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대한민국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을 기초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다만 매각입목의 표지에 관한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8조가 2010. 7. 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3호로 개정되어 별지 제19호 서식이 변경되었음에도 위 개정 전 서식을 사용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2조(산물 인도)
① 갑(대한민국, 이하 '대한민국'이라고 한다)은 대금납입을 확인한 후 을(원고, 이하 원고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9

고 한다)에게 당해 산물을 인도통보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위치도, 벌채구역도 및 매목재적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산물인도증의 교부로서 한다.

제4조(매각산물의 반출)

① 원고는 소정의 기간 내에 매수산물을 국유림 외로 반출하기로 한다. 다만,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 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원고가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제6조(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산물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보증금, 기납된 대금 및 매각임산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4. 인도받은 이외의 산물 또는 인도 이전에 산물을 채취·반출 및 처분을 한 때(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제8조(벌채목표시)

택벌 및 간벌작업에 있어서는 가슴높이부분에 페인트 또는 비닐끈 등으로 표지하고, 뿌리부근에 (산)자 검인을 찍은 입목을 매각산물로 하고, 벌채할 때에는 뿌리부근에 찍은 (산)자 검인을 남겨야 하며, 벌채 및 반출시에 뿌리부근의 (산)자 검인을 없애거나 훼손 또는 불분명하게 한 때에는 이를 매각 대상 외의 입목을 벌채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략)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호의3에서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의 정의는 '지상의 과수, 임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9

과 죽목'인바, 이는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고 있는 과수, 임목, 죽목을 뜻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취득한 것이 위 법률에서 정한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2) 관계 법령의 내용과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목적물은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구 국유림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및 구 국유림법 시행규칙(2013. 1. 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은 국유임산물 중 입목의 매각과 원목의 매각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계약서와 인도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위 별지 제19호 서식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서 제2조 제2항은 목적물의 인도는 벌채구역도 등이 첨부된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는 입목의 매각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에 관하여 벌채나 원목생산 등과 관련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반면, 원목의 매각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인도증에 추가서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9

로 임산물의 위치도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위 별지 제19호 서식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서 제2조 제2항은 매도인인 대한민국이 국유림을 벌채하여 그 산물인 원목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벌채나 원목생산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춘 매수인에 대해서는 위 인도증의 교부로써 소유자의 벌채 권한을 위임함과 아울러 위 인도의무 이행에 갈음하고(국유림법령상 입목의 매각이 이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에 대해서는 권한에 의하여 벌채 및 생산한 원목의 위치도가 포함된 인도증을 교부함으로써 위 인도의무 이행에 갈음하도록 약정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구 국유림법령상 원목의 매각이 이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벌채나 원목생산 등에 관한 자격을 요구한 입찰절차를 통해 이 사건 임산물을 매수하고, 인도증만을 교부받아 입목을 직접 벌채한 국유림법령상 입목의 매각에 의한 매수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국유림법령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조 및 제4조에서 일반적인 입목의 매매와 달리 입목의 벌채 및 원목의 반출을 전제로 한 명시적인 약정 내용을 두고 있다.

위 약정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관련 자격을 갖춘 매수인이 입목을 직접 벌채하여 원목을 반출하는 국유림법령상 입목의 매각에서든, 자격이 없는 매수인이 이미 벌채된 원목을 인도받아 반출하는 국유림법령상 원목의 매각에서든 매수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목적물은 원목으로 동일하고, 다만 벌채의 주체가 권한을 위임받은 매수인인지, 아니면 본래의 권한자인 매도인인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과 인도증의 첨부서류가 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③ 더구나 구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이 사건 계약 제8조 등에 의하면 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9

주(根柱)는 매각 임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나무의 뿌리까지 반출할 권리를 갖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도인은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바(이 사건 계약 제6조 제4호),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대한민국의 의사는 나무의 뿌리 및 밑둥을 제외한 일부를 매각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처럼 근주를 제외한 매각 대상을 가리켜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는 임목이라 할 수는 없다.

④ 한편 현행 지방세법 제15조는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으로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 이후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는 0원이 되는바, 이러한 현행 지방세 관계 법령은 이 사건 계약과 같이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 그 입목의 취득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를 재차 확인하는 취지로 파악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취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9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남해인

판사 최미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9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의3.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현행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9

①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② 국유임산물의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 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② 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주산물의 근주(근주)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8조(매각입목의 표지)

국유림 안의 입목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벌채구역의 경계는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2.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3.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다만,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9

국유임산물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29조관련)

1. 정의

"국유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것(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입찰참가자격 및 첨부서류

가. 입목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목을 매수하거나 벌채허가 등을 받아 벌채한 실적이 있는 자의 경우 : 벌채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자격증 사본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경우 : 임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의 경우 :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입목 외의 국유임산물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 제한 없음

다. 국유임산물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 산림청장이 정하는 참가자격과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임산물의 인도

가. 임산물의 인도는 매각금액의 납부를 확인 후 매각한 산물의 소재지에서 인도증의 교부로써 한다. 다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9

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에는 산물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인도증을 교부할 수 있다.

나. 국유임산물의 인도증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입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구역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나) 실측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측량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다) 운재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운재로 설계도서 1부

(라) 재적조서 1부

2) 원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1)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나) 임산물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 이하 같다) 1부

[별지 제19호 서식]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table>
<tr><td rowspan="2">임산물소재지</td><td>소 재 지</td><td>지번</td><td>지목</td><td>경영계획구</td><td>임소반</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반출(벌채)기간</td><td colspan="5">인도일부터 월 이내</td></tr>
<tr><td>채취(벌채) 면적</td><td colspan="5">㎡</td></tr>
<tr><td>종류(수종)</td><td colspan="4">수 량</td><td>용 도</td></tr>
</tabl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9

	본수 (본)	입목재적 (㎥)	조재(제탄)율 (%)	매각수량 (생산지정) (㎥, 톤(t))	

매 각 대 금 : 원

계약보증금 : 원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담당관(갑) (인)

매 수 인(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 입목·원목외의 경우에는 매각대상 국유임산물의 종류에 맞는 용어·단위로 변경하여 작성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 (대금납입) 을은 매각대금을 소관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을의 신청에 따라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9

대금납입 기한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납입기한을 연기하되, 을은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실제 연체한 일수에 대한 「국유재산법」제73조에 따른 연체료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임산물인도) ① 갑은 대금납입을 확인한 후 을에게 당해 임산물을 인도통보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위치도, 벌채구역도 및 매목재적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임산물인도증의 교부로서 한다.

제3조 (임산물수령) 을은 임산물을 인도받은 후에는 매각임산물의 수량, 품질 또는 산림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매각임산물의 반출) ① 을은 반출기간 내에 매수임산물을 국유림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만일,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이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솔잎혹파리 피해임지로서 피해정도가 "심"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생장량 대금 = 1입방미터당 단가×미벌채재적×0.05×생장기간 해당월수/7

* 1입방미터당 단가는 매각시 산정한 예정가격 단가와 계약 단가를 비교하여 높은 가격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을이 임산물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시점으로 하며, 제1조에 따른 연체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금의 납입지연일수를 제1항의 기간에서 공제한다.

제5조 (미반출임산물귀속) 을이 매수임산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따라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잔여임산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대부 또는 사용허가구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9

안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동임지 안에서 사용하고자 반출 포기서를 제출한 때에는 반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임산물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보증금, 기납된 대금 및 매각임산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1. 지정기간 내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산림관계 법령 또는 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임산물 수령 후 3개월 내에 작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작업을 중지한 때(기상적인 장애로 인한 때에는 제외한다)
4. 인도받은 이외의 임산물 또는 인도 이전에 임산물을 채취·반출 및 처분을 한 때(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제7조 (계약보증금의 반환) 계약보증금은 갑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해제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한다.

제8조 (매각대금의 반환) 갑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벌채목 표시) 골라베기 및 솎아베기작업에 있어서는 가슴높이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한 입목을 매각임산물로 한다. 다만,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의 경우와 벌도목·원목·굴취수목 및 목탄 등으로 매각임산물의 표지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임산물인도시에 그 표지방법을 알리기로 한다.

제10조 (수라의 설치) 매각임산물을 반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라는 목수라 또는 플라스틱 수라에 한한다.

제11조 (임도시설) 을은 매수임산물의 반출에 필요한 임도시설 등을 설계서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공사완료 즉시 갑에게 서면,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갑의 검사를 받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9

아야 하며, 갑은 제1항의 검사결과가 설계서와 상이한 때에는 을이 이를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반출완료통보) 을이 매수임산물의 반출을 완료한 때에는 즉시 갑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생산된 임산물로서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 ① 을이 매수임산물을 채취, 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국유림에 대하여는 이 계약에 다음 사항을 부기함으로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 산지전용신고(대부 또는 사용허가구역 안에서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림형질변경지 실측도를 첨부한 때에 한한다)에 갈음한다.

임지소재지	지번 (임, 소반)	공부면적 (㎡)	대부·사용허가 면적(㎡)	산지전용 면적(㎡)	기간	비고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국유림으로서 당초 대부 또는 산지전용신고한 국유림 외의 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른다.

제14조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갑은 을이 국유림 안에 매수임산물의 채취·가공 또는 운반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철거가 필요한 때에는 을로 하여금 이를 철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도시설은 철거대상시설물에서 제외한다.

주 : 갑과 을은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20호 서식]

임 산 물 인 도 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9

<table>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임산물 소재지</td><td>소재지</td><td>지번</td><td>지목</td><td colspan="2">경영계획구</td><td>임소반</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채취(벌채)면적</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3">종류(수종)</td><td colspan="6">수 량</td></tr>
<tr><td>본수
(본)</td><td>입목재적
(㎥)</td><td colspan="2">매각수량
(생산지정)
(㎥, 톤(t))</td><td colspan="2">반출(벌채)
기간</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7">년 월 일자로 계약한 국유임산물(제 년도분)을 위와 같이 인도합니다.

년 월 일

인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7">위 인도한 국유임산물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성명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7">※ 첨부서류
1. 입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구역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나. 실측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측량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다. 운재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운재로 설계도서 1부
라. 재적조서 1부
2. 원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나. 임산물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 이하 같다) 1부
3. 입목·원목이 아닌 국유임산물을 매각하는 경우
가. 구역위치도 1부
나.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에 구역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td></tr>
</tabl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9

다) 또는 실측도 1부 다. 임산물의 위치도 1부(채취된 국유임산물을 매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수량조서 1부 주 : 입목·원목외의 경우에는 매각대상 국유임산물의 종류에 맞는 용어·단위로 변경하여 작성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끝.